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469
----------	-----

제안년월일 : 2019년 3월 7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8년 12월 28일 양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8)을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3.7.)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2019.2. 개정)’의 내용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내실 있는 공무국외활동제도 운영을 위해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2019.2 개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공무국외활동, 출장, 여행 등 명칭을 공무국외활동으로 통일함.
- 공무국외활동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신설).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선출하도록 함(안 제6조).
- 공무국외활동 심사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1항, 안 별표 신설).
- 공무국외활동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10조, 안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 공무국외활동계획서 및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

안 제12조 단서 신설)

-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의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공무국외활동 예산 편성·집행 기준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공무국외여행” 을 “공무국외활동” 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공무국외활동 출장” 을 “공무국외활동” 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2명” 을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위촉한다.

안 제6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하며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하고” 를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 를 “제4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에” 를 “제10조제1항에” 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반수의 찬성” 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공무국의활동계획서를” 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의활동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계획서 제출 당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 결과 보고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의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10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공무국의활동 계획서를” 를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무국의활동보고서” 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의활동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로, “제출해야 한다” 를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의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의활동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

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에서 검토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활동 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조제4항 중 “출장”을 각각 “활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제7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활동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활동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활동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활동 여부 및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1. 국외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		
	3. 국외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 국외활동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2.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3.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2.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	(비교시찰의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1.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활동 내용을 활동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2. 공무국외활동 결과 및 노하우를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		

공무국외활동계획서

1. 활동개요

활동목적							
활동동기 및 내용							
활동기간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활동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활동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활동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활동효과

5.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활동 배경 및 활동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활동국·활동목적·활동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활동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걸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활동 개요

1. 출 장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활동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활동하게 될 활동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공무국외활동의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당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보고서에 그 개최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활동 목적	
활동 기간	

활동자	성 명	(서명)
	소 속	
검 토 의 견		
<p>* 공무국외활동국과 기관 방문을 통해 발굴한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 등 모범 사례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①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p> <p>4.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p> <p>5.~6. (생략)</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공무국외활동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p> <p>제3조(기본원칙) ① ~ ③ (생략)</p> <p>④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면 아니 된다.</p> <p>⑤ ~ ⑥ (생략)</p> <p>제5조(허가절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활동 출장은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p>	<p>제2조(적용범위) ①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활동-----</p> <p>4. ----- ----- 활동-----</p> <p>5.~6. (현행과 같음)</p> <p>② ----- ----- ----- ----- ----- 공무국외활동----- --.</p> <p>제3조(기본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활동----- -----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허가절차) ----- ----- 공무국외활동----- ----- -----</p>

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서울특별시의 회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

제5조의2(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

· 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2명
2. (생략)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신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⑤ (생략)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 7. (생략)
- ②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외활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회기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한다.
-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포가 해제될 때까지 특별한 사

-----.
-----.

1.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
2. (현행과 같음)
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

② 의장은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위촉한다.

③ -----
-----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7조(심사기준) ① -----
-----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

1. ~ 7. (현행과 같음)
- ② ----- 제4호-----

-----.

<삭제>

<삭제>

유가 없으면 국외활동을 실시할 수 없다.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流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제10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활동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 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한다.

<신설>

제8조(회의) ① -----
-----, 제10조제1항에-----
-----.

② -----
----- 3분의 2 이상
의 찬성-----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 ① -----
-----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
여 --. -----
-----.

② 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계획서 제출 당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 결과 보고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

②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부터 20일 이내에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제13조(사후관리 등) (생략)

<신설>

<신설>

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

제12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① -----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활동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에서 검토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의2(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신 설> [별표 1]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제7조 관련)

<신 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신 설>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작성요령

<신 설> [별지 제3호 서식]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